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9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박주민 · 이성윤 · 박홍배

조 국・이강일・박지원

허종식 • 박해철 • 김 유

김남근 • 오기형 • 박지혜

박민규 • 허성무 • 박희승

김동아 · 장종태 · 문금주

강준현 · 최민희 · 민형배

의원(21인)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 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1 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201조(구속 및 조건부 석방)

- 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1. 차량운행의 전면금지, 또는 지방법원판사가 특정하는 차량의 운행금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차량을 보관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맡겨 둘 것
-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중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 의료기관 등에 의한 검사, 치료를 받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 4. 피의자가 부담하는 배우자나 자녀, 그 밖의 가족 등에 대한 부양료, 교육비 등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 6.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 법원판사가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⑥ 검사는 제5항의 결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98조, 제99조,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0조의2,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8 제5항제5호의 조건을 정한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 ⑨ 제5항의 결정은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석방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01條(拘束) ① ~ ④ (생 략) < <u><</u> < <u>込 설></u>	제201조(구속 및 조건부 석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 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차량운행의 전면금지, 또는지방법원판사가 특정하는 차량의 운행금지, 필요한 경우지방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차량을 보관하거나운전면허증 등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맡겨둘것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기타 남용되거나 중독작용을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사용하지 아니할 것

<u><신</u> 설>

<신 설>

3. 의료기관 등에 의한 검사,치료를 받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 4. 피의자가 부담하는 배우자나 자녀, 그 밖의 가족 등에 대 한 부양료, 교육비 등의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할 것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 6.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 여 지방법원판사가 정하는 적 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⑥ 검사는 제5항의 결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등관공서나 그 밖의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한다.
- ⑦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98조, 제99조, 제10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100조의2,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 는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신 설> ⑧ 제5항제5호의 조건을 정한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를 준용한다. ⑨ 제5항의 결정은 피의자에 <u><신</u> 설>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 실한다. ①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생략)